

이야기모형을 적용한 배심원들의 판단결정과정의 검증연구*

김 은 영**

국 | 문 | 요 | 약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후 국내에서의 활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곧 배심원들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판단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이나 경험적 검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의 실증적 연구 없이 국외의 이론이나 연구결과를 국내에 배심원 연구에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배심원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실험연구를 수행하고 배심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그 검증력을 인정받고 있는 Pennington 과 Hastie의 이야기모형(the Story Model)의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의 배심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2지역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모의실험배심참여자들 302명을 모집 하여 모의재판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에 참가한 배심원들은 이야기모형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재판과정 중에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는 증거 및 사건정보를 기초로 배심원들 각자가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배심원들이 구성한 이야기가 이들의 평결의 중재(mediation)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판과정 중에 제시되는 증거와 사건의 정보가 배심원들이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 중 하나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유리하게 진행이 되도록 할 경우, 이러한 제시순서에 의해서 배심원들이 형성하는 이야기가 영향을 받아 이들의 최종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야기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의 사전지식 및 인과관계를 가지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주장이 국내의 배심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연구의 제한점, 공헌점, 그리고 형사정책적 함의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한 등이 논의되었다.

❖ 주제어 : 국민참여재판, 모의배심재판, 배심원의사결정, 이야기모형(the Story Model), 실험연구.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과제번호 NRF-2010-332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교수

I. 서론

2008년 한국의 재판절차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이 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는 단순히 국가의 손에 형사사법재판의 결정권한을 맡겨두지 않고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반영이 되어는 사건으로 학계와 사회는 한국의 재판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재판결과에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기대가 있었으나 반대로 비전문가인 일반시민들의 재판의 참여가 오히려 정확한 양형과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제시된 부정적인 견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의 판결을 1심에서의 판결만으로 제한하고 배심원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이나, 배심원과 판사와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 피고인이나 원고는 다시 상고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한 재판비용이 증가하고 배심원들의 결정에 재판부나 여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의 문제들을 결코 배제할 수많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배심원의 판단능력과 그 과정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사법제도에서 배심원들의 역할을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법적절차로 인정해온 미국과 영국 등의 학자들이 매우 활발히 연구하는 주제이다. 국외의 배심원들의 판단능력과 판단의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증거 그리고 재판의 절차 및 법적 근거 등의 법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여 편향되었거나, 올바르게 못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은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형사사법학 등의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융합적으로 수행되었고 배심원들의 판결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의 이론들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Hastie, 1993; Levett, Danielsen, Kovera & Cutler, 2005; Readon, 2008).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의 연구와 이론의 발전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단지 최근에 들어서 소수의 논문들만이 배심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태도들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박광배 & 이수정, 2009; 심지예, 2010), 국민참여재판의 주체가 되는 배심원들의 능력과 판결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형사사법적 관점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의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의 경험적 연구는 지금까지도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배심원의 성격적인 특성과 성향에만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서 배심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평가하고 판결에 이르는 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지식의 진보에 큰 제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배심원제도에 관한 연구결과가 국내의 배심원제도에 일반화되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검증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국외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하여 국내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배심제도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여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노력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배심원들의 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이야기모델(the Story Model)을 사용하여 국내의 배심원들의 판단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적용되는 이야기모델은 Pennington와 Hastie (1986, 1988, 1990, 1992, 1993)에 의해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형성하였고 이 이론의 핵심주장은 배심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인지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모델의 주장에 근거하여,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형사재판의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를 통해 배심원 개인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야기 모델(the Story Model)

미국과 영국 등, 서구의 연구자들이 발견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론들은 다양하며 이론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들 이론들의 설명력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경험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Levett, et al., 2005). 이러한 이론들 중 이야기모델은 개별적인 배심원들의 개인적인 판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야기모델은 Bennet에 의해 처음 제기되고 이 후에 Pennington과 Hastie(1986, 1988, 1990, 1992, 1993)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으로서의 틀을 형성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 Pennington과 Hastie는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을 ‘이야기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인지과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 및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증거와 변론을 통해 듣게 되는 정보 등을 종합하여 사건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술형태의 이야기를 창조해낼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이다. 또한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제시된 증거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발전시키게 되면 지속적으로 재판과정 중에 듣고 보게 되는 증거들에 대한 그 다음의 이해와 궁극적 판결을 위한 자신들의 의사결정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재판과정 중 만들어진 배심원들이 창조한 이야기는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과 배심원들의 마지막 판결 사이에 인지적 중재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Pennington & Hastie, 1992).

이야기모델에서는 앞서 설명한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우선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증거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처음의 이야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거쳐 재판 마지막에 판사로부터 듣게 되는 판결 시 선택 가능한 양형의 종류를 고려한 후, 또 다른 대안적 이야기가 없을 지를 고려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이 스스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양형의 종류를 구별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판결결정에 다다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결에 다다르기 전에 배심원들은 단계별로 자신이 구성한 이야기가 옳은 지 여부

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이야기가 재판에 제시된 증거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그럴듯한지,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야기모델에서 배심원들의 이야기 형성과정 중에서 중요한 요인들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배심원들이 재판과정 중 자신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가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에 제시된 증거와 함께 재판과 관련해서 배심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지식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배심원 자신들이 세우는 사건에 대한 몇 가지의 가정 또는 예측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다(Pennington & Hastie, 1986; 1992; Levett et al. 2005).

이러한 자신들의 지식과 사건의 과정에 대한 가정 및 예측들은 인과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배심원들이 사용하는 인과성은 동기적 인과성과 물리적 인과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실제의 재판에서는 종종 증인의 증언이 부정확하거나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가 있어 배심원들이 특정 사건의 배후에 있는 동기나 목적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불완전하게 연결되어있는 이야기들은 배심원들 유사한 사건과 관련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는 재판 변론 중의 변호인이나 검사에 의해 제시되는 변론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형성해가는 이야기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적배경과, 태도, 신념, 개인적 경험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이나 이야기의 인과성을 추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다양한 추론들은 실제 사건과 상상에 의한 이미지 사건들을 일정한 사건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게 되는 에피소드 스키마(episode schema)라고 하는 수직적 단계의 이야기 구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스키마들은 배심원들의 다양한 개인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재판에서 다루고자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형성하는 배심원들의 머릿속의 이야기들 역시 다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요인들 및 과정들에 관해서 이야기 모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서로 상충되는 진술들과 증거의 내용들을 자신들이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기반으로 유사한 형태로 수정하여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Finkel & Groscup, 1997; Smith & Studebaker, 1996).

이야기모델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 배심원들이 구성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이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럴듯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서는 배심원은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뒤에, 또 다른 대안적 이야기들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Pennington & Hastie, 1992). 그리고 마지막의 판결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배심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판결유형의 특성들에 비교하여 가정 적절히 일치하는 판결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와 선택과정에서 재판과정 중 변호인과 검사 등의 법전문가들이 사건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일화적 행위들(episodic actions)에 대해 제시한 주요한 사건의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배심원들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은 피의자가 무죄라는 전제아래에서 배심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판사에 의해 제시된 판결 중의 하나를 결정하기에 (예, 유죄 중 1급살인 또는 2급살인)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판결에 임하게 된다. 판결 전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물들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특정한 기준을 세우는데, 만약 배심원들이 만든 이야기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의 특성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배심원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모델은 주장하고 있다.

2. 이야기 모델을 검증한 선행연구 분석

배심원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야기모델을 검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이 배심원들이 재판과정 중에 제시된 증거물들과 증언들을 구술적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하여 판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Hastie & Pennington,

2000; Huntley & Costanzo, 2003; Levett et al., 2005; Pennington & Hastie, 1986, 1988, 1992, 1993; Wolfe & Pennington, 2000). Pennington과 Hastie(1986)의 초기의 연구는 배심원들이 재판의 사건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 이야기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형태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Pennington과 Hastie는 매사추세츠주의 대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실험을 수행하여 이야기모델의 주장을 검증하였다. 이 실험에서 모의재판참가자들은 살인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을 비디오로 시청한 후 재판 중에 제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재판에서 다루어진 사건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큰 소리로 설명하도록 요구되어졌다. 그리고 바로 뒤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 각 배심원들의 개인적인 판결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과정을 통해 Pennington과 Hastie는 각 배심원들이 재판의 증거물들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jurors' mental representation of evidence) 알아 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 Pennington과 Hastie는 배심원참가자들의 재판에 대한 기억의 인지구조는 이들이 재판에서 보고 들은 사건에 대한 순차적인 에피소드들이 시작, 중간, 그리고 마지막의 순서가 분명한 이야기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구술형식의 이야기들로 저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과관계가 있는 형식으로 연결되어있었고 배심원 참가자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 속의 증거물들의 순서의 배열이 배심원참가자들이 내리는 판결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참가자들의 집단 간의 이야기 구조와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Pennington과 Hastie의 1986년의 연구에서는 전체실험참가자들이 구술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내린 판결(1급살인(first-degree murder), 2급살인(second-degree murder), 일반살인(manslaughter), 그리고 무죄(not guilty))과 연결되는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의재판의 피의자에게 1급 살인의 유죄판결을 내린 참가자들의 집단은 2급 살인의 유죄판결을 내린 참가자들이 형성한 이야기와 다른 구조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일반살인, 그리고 무죄의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의 이야

기도 서로의 다른 판결의 결과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판결을 내린 각 집단의 참가자들은 모의재판의 사건에 대해 서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ennington과 Hastie(1988)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의 회상기억을 사용하여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통해 구성하는 증거의 구조가 판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시나리오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의재판내용을 읽고 그 후에 참가자들이 판결의 모의재판의 다양한 판결결과에 따라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등장한 증거물들을 다시 재인할 수 있는 여부를 검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Pennington과 Hastie는 참가자들이 이전에 본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이야기 구조에 포함되며, 개인적인 판결과 연결이 된 증거물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해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의 회상기억은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은 이전에 본 증거물들 중 자신들의 내린 판결과 유사한 판결로 결론이 난 이야기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내용들을 자신들이 내린 판결과 반대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증거물들보다 회상해내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판결을 이끌어낸 자신들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물들이 제시된 경우 거의 인지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제시된 증거물들의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테스트의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구성한 이야기와 상응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정했으나, 자신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중요도 순위를 매겼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ennington과 Hastie의 1986년의 연구결과와 그들이 이야기 모델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는 내용으로서 배심원들이 구술적 이야기 형태로 사건의 증거물들에 대한 인지적 구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구술적 이야기가 자신의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앞선 연구의 발견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Pennington과 Hastie의 1988년의 연구는 기억회상과정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물들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자발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이렇게 형성된 이야기가 배심원들의 판결에 선행적으로 영향

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즉, 배심원들이 먼저 판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재판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Pennington & Hastie, 1992: 541).

마지막으로 Pennington과 Hastie(1988)는 같은 연구에서 재판의 증거물의 제시 순서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한 재판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의 오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실험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두 오디오테이프 중 하나에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증거제시와 기소내용이 재판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더욱 쉽게 될 수 있도록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따라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게 증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이때 원고에 대한 증거나 증인들의 출석은 일관성 있고 특정한 이야기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순서가 배열되지 않고 섞여있는 순서대로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이프에는 반대로 피고에 대한 변호가 배심원들이 듣기에 재판내용을 이야기로 구성하기 쉽게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따라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게 증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재판과정을 녹음해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자들은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더욱 쉽게 인지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판과정에서 하나의 판결의 카테고리(예, 유죄 또는 무죄판결) 연결하기가 쉬워지므로 연결이 용이한 판결내용으로 더욱 많이 판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Pennington과 Hastie의 1992년의 연구는 앞선 두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다음의 두 가지 연구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배심원들의 판결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형성하기 어렵게 증거가 제시되는 순서가 조작될 때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둘째, 배심원들의 이야기가 재판에 제시되는 증인들의 신뢰성의 영향에 의해 중재되는지의 여부이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두 건의 형사재판과정(살인사건과 뺑소니사건)을 축약해서 기록해 둔 형식의 시나리오를 배심원들이 읽게 하였다.

실험에서 두 사건에 대한 증거제시의 조작은 증거들이 이야기를 구성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된 ‘이야기구성(by story)’과 이와 반대로 이야기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이슈별 구성(by issue)’의 두 종류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이야기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증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범죄동기, 성격, 신

뢰성, 그리고 범죄에 대한 기회 등을 보다 완성된 형태로 설명하고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유리하도록 순서가 구성되어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슈별 구성’은 반대로 증언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어려운 순서로 증언이 제시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무죄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증언이 제시되고 나서 바로 피의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증언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살인사건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물들이 유죄판결에 유리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제시하였고, 두 번째의 뺑소니 사건은 재판에 제시된 증거물들이 무죄판결에 유리할게 순서가 정해지도록 조작되어있었다(Pennington & Hastie, 1992: p.194).

앞서 소개한 Pennington과 Hastie의 선행연구들 이외에 이야기 모델을 검증한 연구들 역시 배심원들이 재판의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구성하는 이야기가 배심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Huntley & Costanzo, 2003; Newman, Duff, Schnopp-Wyatt, Brock & Hoffman 1997; Olsen-Fulero & Fulero, 1997). Olsen-Fulero와 Fulero(1997)는 강간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위해 Pennington과 Hastie의 이야기모델을 적용시켰으며 이야기모델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Newm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7)는 OJ Simpson의 사건 사례를 사용하여 배심원들이 구성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인종이 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재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Huntley와 Costanzo(2003)의 연구는 배심원의 성별이 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심원들이 구성하는 이야기가 중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배심원의 개인적인 특성들,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이 영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배심원들이 형성하는 이야기가 중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Pennington과 Hastie(1986, 1988, 1990, 199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의 이야기의 주된 역할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물들의 영향이 배심원의 이야기가 중재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adon, 2008).

III. 연구방법

1. 모의배심실험의 목적 및 가설

이야기 모델에 관한 경험적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모의재판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모의배심실험연구가 계획되었다. 모의배심연구는 이야기 이론과 Pennington 과 Hastie(1988, 1992)의 연구에서 검증하고 주장한 바와 같이 배심원들이 판결 위해서 재판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증거 및 정보 등을 조합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창조해낼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과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판에서 증거나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가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형성하기 쉽도록 특정 평결의 방향으로 구성이 된다면 배심원들의 평결이 연구자가 의도한 그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을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증거제시가 이야기를 구성하기 어렵게 일관성이나 인과관계성이 없이 순서가 정해져서 제시된다면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역시 어려움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야기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증거 및 정보 등을 조합하여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는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가 특정한 평결방향(예, 김사측의 증언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변호사측의 증언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쉽도록 순서를 조작하면 배심원들은 그 평결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형성하여 그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모의배심실험연구방법 및 절차

이와 같은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의재

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를 다양하게 조작하여 다른 집단의 배심원들에게 제시하여 이야기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들을 사용하여 배심원들의 기억에 차이가 없도록 같은 내용의 증언을 단지 판결의 방향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순서로 구성된 시나리오들로 구성하여 네 집단으로 나뉜 배심원 참가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1) 검사측의 이야기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슈별순서형식, 2) 검사측의 이슈별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야기순서형식, 3) 검사측의 이슈별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슈별순서형식, 그리고 4) 검사측의 이야기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야기순서형식이다.

네 종류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Pennington과 Hastie(1988, 1992)가 수행한 연구에서 사용한 사건의 진행에 관해 유죄 또는 무죄의 한 가지 평결방향으로 보다 완성된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의 증언을 나누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기 쉬운 순서(by story order)’로 구성하고 있는 것과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인의 증언이 유죄나 무죄의 한 가지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죄에 유리한 증언과 무죄에 유리한 증언이 섞여져서 제시되어서 하나의 평결방향으로 완성된 이야기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슈별 순서(by issue order)’로 구성되어 있는 시나리오의 설계를 재사용하였다(참고, Pennington & Hastie, 1992, p. 194).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모델을 발전시켜서 ‘검사 측에 유리한 이야기 순서’, ‘변호인 측에 유리한 이야기 순서’, ‘검사 측의 이슈별 순서’,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이슈별 순서’의 네 가지의 형식들을 각각 두 가지씩을 조합하여 네가지의 모의실험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검사측의 이야기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슈별순서형식’란 유죄평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사측의 증인의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가 정해지는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변호인측의 증언이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리기 쉽지 않은 방향으로 일관성없게 섞여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검사측의 이슈별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야기순서형식’는 검사측의 증언제시가 일관성없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유죄판결의 이야기를 형성하기 어렵게 하고 변호인측의 증언 순서가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쉽게 증인의 증

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의 증언의 순서를 조작한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그리고 ‘검사측의 이슈별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슈별순서형식’은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증언의 순서가 어떠한 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형성하기 쉽지 않도록 이야기들의 연계성이 잘 형성되지 않게 각각 이슈별 순서로 제시되는 시나리오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측의 이야기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야기순서형식’은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증언제시의 순서가 각각의 유죄와 무죄의 이야기를 형성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조합으로 시나리오를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실험시나리오에 따라 무작위로 네 집단으로 나누어진 배심원단은 각각의 모의재판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자신들이 읽은 재판내용에 관해 판결을 내리고 자신들의 판결에 따라 피의자의 살인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살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요구되어졌다. 이를 통해 집단 간의 판결에 대한 확신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여 첫 번째 가설인 증거의 제시 순서가 일정하게 의도된 방향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 순서가 배심원들의 이야기의 형성과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야기의 구성이 배심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인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인과관계와 이야기의 연계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심원들이 자신이 내린 평결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의 피의자의 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의 피의자가 살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더 큰 확신이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배심원들에게 피의자의 살인의 유죄에 대한 또는 무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질문하여 자신의 판결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진행되기에 유리한 방향의 증거와 증언의 제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집단 간의 평균비교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본 연구의 연구자는 참가자들을 모집한 두 지역의 세 곳의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와 범죄심리학 수업 및 경찰학개론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강의실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자로 선정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네 종류의 서면으로

작성된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받게 됨으로써 무작위로 네 종류의 실험집단으로 분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네 종류의 시나리오에 참가하는 네 집단에 소속되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의배심실험의 순서는 참가자들이 우선 “모의배심원실험설문지”의 항목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 제시되는 네 종류 중 하나의 “모의재판 시나리오” 읽도록 하였고 뒤이어 바로 재판내용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확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살인에 대한 또는 살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참여자는 배심원으로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을 설문지에 자필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와 보조연구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의배심실험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재판시나리오를 다르게 조작하여 읽은 배심원 참가자들의 평결 및 설문내용을 수집하여 SPSS의 데이터로 코딩을 하고 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일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3. 모의배심실험시나리오

모의배심실험시나리오의 내용은 실제의 한 형사재판사건을 모의배심연구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 사용된 사건의 개요를 유죄에 유리한 ‘검사 측의 이야기별 순서’와 무죄에 유리한 ‘변호인 측의 이야기별 순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유죄에 유리한 ‘검사 측의 이야기별 순서’ 개요]: 검사는 피고 H가 피해자인 T와 가택침입강도사건을 벌이고 나서 T가 자책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인 T의 머리에 총을 세 번을 쏘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요청에 의해 재판에 나타난 증인들은 피고인 H는 피해자 T와 함께 가택침입을 하여 장총과 권총을 몇 자루를 포함한 많은 물건들을 훔쳤다고 하였다. 다른 한 증인은 피해자인 T가 경찰에 자수하자고 하자, 화를 내면서 격분했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간다고 말하였을 때 H가 피해자에게 가했던 위협한 것을 보았다고 증

언하였다 또 다른 증인은 H가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인 T가 살해되던 날 밤에 H가 외출하였다는 증언을 진술하였다. 검사측 증인인 형사는 사체 옆의 눈에서 발견된 신발자국이 피고 측의 신발 크기와 일치하며,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서 1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점, 총이 사체와 피고인의 거주지의 사이의 장소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의 친구들이 그 사체가 발견되기 전부터의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피의자의 그간의 범죄행위들과 살인사건이 있기 전의 가택 침입방법들로 사용된 나쁜 행위들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무죄판결에 유리한 ‘변호인 측의 이야기별 순서’ 개요]: 변호인은 피고인 H는 T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살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T가 자수하는 것을 H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살인에 대한 동기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변호인 측 증인은 T와 H가 침입한 집이 T의 여자 친구의 전 남편인 W의 집이며, 집주인인 W가 피고와 피해자의 가택침입사건 이후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검찰 증의 증인으로 나선 경찰에게 275mm 사이즈의 신발자국이 사체 옆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지만 W 역시 275mm의 신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의 48퍼센트의 남자가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반대심문에서 사체는 피고측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1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곳은 또한 피해자가 살고 있던 곳임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검사 측의 이슈별 순서’와 무죄에 유리한 ‘변호인 측의 이슈별 순서’로 사용된 시나리오는 앞선 이야기별 순서에서 인과관계와 연결성 있게 제시된 증거와 증언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4. 모의배심실험참가자

모의배심실험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두 지역(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세 곳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3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 중 응답을 거의 하지 않은 8명의 실험자를 제외하고 총 302명의 실험결과가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대학생모집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세 곳의 대학을 먼저 선정하고 경찰행정학과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배심재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실험참가를 자원하는 학생들 모집하였다. 참가를 희망한 대학생들에게 보상금이나 추가학점 등의 혜택은 없었다. 연구에 참가할 학생들은 현재의 배심원의 기준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20세 이상으로 나이와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살인사건에 관한 모의배심실험을 수행하므로 양형을 선고할 경우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대학생참가자들만을 최종 실험참가자로 포함하였다.

5. 변수

1) 종속변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종속변수가 사용되었다. 첫째,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결과: 네 집단 간의 모의배심시나리오에 따른 배심원 참가자들의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배심원 평결의 유죄(1) 또는 무죄(0)여부가 첫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둘째, 피의자의 살인죄가 유죄일 가능성에 대한 확신여부: 각 집단의 실험에 참가한 배심원 참가자들이 자신의 평결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 후 “피의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십니까?”의 질문에 0에서 시작하여 각 5 %의 단위가 증가하는 형태의 21단계의 선택으로 구성된 응답지에 자신의 확신정도를 선택하는 라이커트 스케일로 측정되었다(0=0, 1=5%, 2=10%, 3=15%, 4=, 20%, ... 19=90%, 20=95%, 21=100%). 셋째, 피의자의 살인죄가 무죄일 가능성에 대한 확신여부: 각 집단의 실험에 참가한 배심원 참가자들이 자신의 평결을

선택한 뒤, “피의자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십니까?”의 질문에 21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0=0, 1=5%, 2=10%, 3=15%, 4=, 20%, ... 19=90%, 20=95%, 21=100%).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독립변수는 네 집단을 구별하는 모의재판시나리오의 형태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들을 배심원들의 기억에 차이가 없도록 같은 내용의 증언을 단지 판결의 방향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순서로 구성된 시나리오들로 구성하였다: 1) 검사측의 이야기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슈별순서형식, 2) 검사측의 이슈별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야기순서형식, 3) 검사측의 이슈별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슈별순서형식, 그리고 4) 검사측의 이야기순서형식 vs. 변호인측의 이야기순서형식이다.

IV. 연구결과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가 <표1>에 제시되어있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남자 189명(63%), 여자113명(37%)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나이는 23세로서 30세에서 20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참가 대학생들의 전공은 경찰학전공학생이 291명(96%) 그리고 비 경찰학전공자가 11명(4%)이었으며, 학생들 중 이전에 배심원으로 실제 참여재판을 경험한 참가자는 3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가정의 평균연간수입은 2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중립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38%), 진보적 성향에 가깝다(24%)와 보수적 성향에 가깝다고 응답한 참가자들(2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종교 활동에 한 달에 한번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68명(22%)으로 나타났다.

〈표1〉 표본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총=302명)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배심원판결(유죄=1, 무죄=0)	32%		0	1
피의자가 살인죄일 가능성에 대한 확신(%)	43.46	24.64	0	100
피의자가 살인죄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확신(%)	56.19	24.86	0	100
성별(남자=1, 여자=0)	63%		0	1
나이(연속변수)	23	2.09	20	33
전공(경찰학전공=1, 기타=0)	96%	.18	0	1
주거지역(서울 및 수도권=1, 기타=0)	54%		0	1
가정연평균수입 ¹	2.54		1	6
정치적성향 ²	4.13		1	7
종교활동	22%		0	1

¹가정연평균수입 (1= 2천만원 이하, 2=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3= 3천만원에서 45백만원 사이, ... 7=75백만원 이상)

²정치적 성향(1=강한보수, 2=보수, 3=보수에 가까움, 4=중립, 5= 진보에 가까움, 6=진보, 7=강한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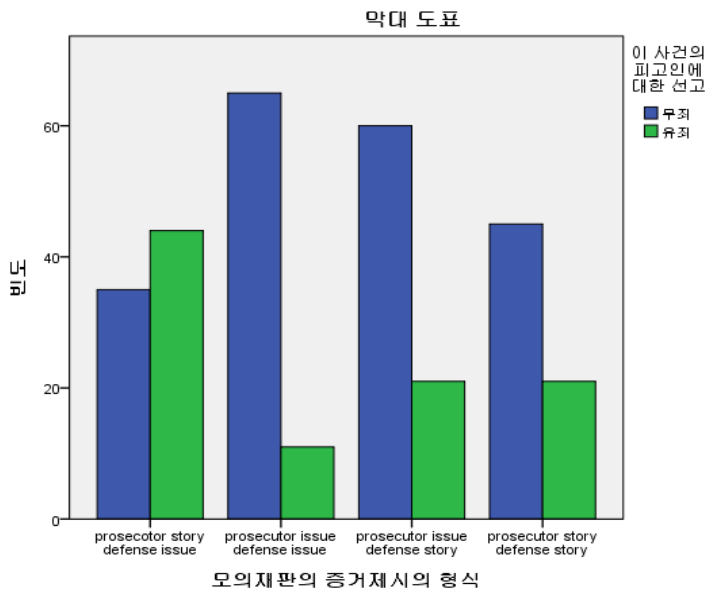
다음의 <표2>는 모의배심설문실험에 참가한 집단들이 네 가지 다른 조건의 증거 제시순서에 의해서 그들의 배심판결(유죄 또는 무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chi^2(3, N=299)=32.42, p<0.001$)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분석결과를 가설 1의 경우 이야기 모델이 주장하는 대로 검사측의 증언제시의 순서가 유죄판결을 내리기 쉬운 이야기 순서이고 변호인의 증언의 제시가 이슈별 순서로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배심원 참가자들이 피고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유죄판결의 비율이 55.7%)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가장 낮았다(무죄판결의 비율이 44.5%). 그리고 유죄판결에 불리하고 변호인의 무죄판결에 유리하게 구성된 검사측의 증언이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야기별 순서의 모의재판시나리오를 읽을 때 배심원 참가자들이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유죄판결의 비율이 14.5%),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죄판결의 비율이 85.5%). 그리고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증거제시가 둘 다 이야기별 순서로 구성되어있거나 어느 쪽도 이야기별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유죄판결의 수는 앞선 두 집단의 경우에 비해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경우 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의배심설문지타입별 배심원들의 평결(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교차분석(n=302)

배심원평결	설문지타입				합계
	검사측 이야기 vs. 변호인측 이슈	검사측 이슈 vs. 변호인측 이야기	검사측 이슈 vs. 변호인측 이슈	검사측 이야기 vs. 변호인측 이야기	
유죄	44(55.7%)	11(14.5%)	21(25.9%)	21(31.8%)	97
무죄	35(44.3%)	65(85.5%)	60(74.1%)	45(68.2%)	205
합계	79(100%)	76(100%)	81(100%)	66(100%)	302

〈도표1〉 모의재판의 증거제시의 형식에 따른 유죄 및 무죄의 선고에 대한 막대도표



이와 같은 결과는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가 특정한 평결방향(예, 검사측의 증언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변호사측의 증언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쉽도록 순서를 조작하면 배심원들은 그 평결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형성하여 그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증거 및 정보 등을 조합하여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모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약 배심원들이 재판에 제시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욱 완성도 있게 형성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내린 평결이 사실일 가능성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가장 많이 평결한 검사측의 이야기별 순서 vs. 변호인측의 이슈별 순서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실험집단의 실험참가자들이 그 외의 시나리오의 실험집단 즉 검사측의 증거제시가 이슈별순서로 제시되거나 변호인측의 증거가 이야기별 순서로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에 소속된 실험참가자들보다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에 더 많은 확신을 가질 것이고 이는 그들의 유죄판결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는 이야기 모델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인과관계와 이야기의 연계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근거하며 자신의 판결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진행되기에 유리한 방향의 증거와 증언의 제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모델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가장 많이 평결한 검사측의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의 이야기별 순서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실험집단의 실험참가자들이 그 외의 집단의 배심원 참가자들보다 피의자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이 더 높고 자신의 무죄의 평결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서는 실험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평결에 대한 선택과 재판의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를 조작한 네 가지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조건에 따라 (4가지 증거 제시순서조건)에 대한 두 방향의 배심원의 확신 (2가지 질문: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피의자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

각되는 가능성의 확신')에 대해서 ANOVA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검사측의 이야기별 순서 vs. 변호인측의 이슈별 순서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배심원 참가자들의 '피고인의 살인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그 외의 모의집단 배심원 참가자들의 확신에 비교해 본 결과 ANOVA 분석결과는 $F(3, 298) = 4.97^*, p < 0.05$ 로 검사측의 이야기별 순서 vs. 변호인측의 이슈별 순서의 모의재판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Post Hoc 분석으로 Sheffe, Bonferroni, Sidak, 그리고 Turkey b의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Scheffe의 결과는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타입의 모의재판시나리오를 읽고 평결을 내린 집단이 나머지 세 종류의 모의재판시나리오를 읽고 평결을 내린 집단과 유의확률 0.05미만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Bonferroni와 Sidak의 분석결과는 앞선 Sheffe의 분석결과보다 더 많은 집단간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검사측의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의 이슈별 순서집단', 그리고 '검사측의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의 이야기별 순서', 그리고 '검사측의 이야기별 순서 vs. 변호인의 이야기별 순서'의 나머지 세 집단들이 '검사측의 이야기별 순서 vs. 변호인측의 이슈별 순서'의 집단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urkey b의 분석결과는 검사의 증거제시가 이야기 순서로 제시된 두 집단이 나머지 검사의 증거제시가 이슈별로 제시된 집단과 차이가 나는 집단인 것을 보여주어 네 집단 중 두 집단씩 동일집단군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검사측 이슈 vs. 변호인측 이야기 그리고 검사측 이슈 vs. 변호인측 이슈가 한 집단, 그리고 검사측 이야기 vs. 변호인 이야기 그리고 검사측 이야기 vs. 변호인측 이슈의 한 집단으로 나뉘어짐).

이와 같은 차이는 변호인의 증거제시의 형식의 순서형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배심참가자들이 피의자의 살인죄에 대한 유죄의 가능성의 확신하는 정도는 변호인의 증거제시의 설득력보다는 검사측의 증거제시가 이야기 순서로 제시되었는가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3〉 배심원들의 평결의 확신에 대한 실험집단 간 Anova 분석결과 (n=302)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8722.37	3	2907.45	4.97*	0.002
집단내	174036.65	298	584.01		
합계	182759.02	301	607.17		

종속변수: 피의자의 살인죄의 가능성에 대한 배심원의 확신정도

(0=0, 1=5%, 2=10%, 3=15%, 4=, 20%, ... 19=90%, 20=95%, 21=100%)

Bartlett's test for equal variances: $\chi^2(3) = 8.94435$, Prob> $\chi^2 = 0.038$

〈표4〉 네 집단 간 사후검증(Post Hoc) 다중비교결과

집단별비교	Scheffe	Bonferroni	Sidak
	평균차(유의확률)	평균차(유의확률)	평균차(유의확률)
(1)	10.73(.056)	10.73*(.036)	10.73*(.036)
(2)	12.03*(.021)	12.03*(.011)	12.03*(.011)
(3)	1.64*(.98)	1.64(1.00)	1.64(1.00)

1)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의 비교; 2)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야기별 순서의 비교; 3)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의 비교

두 번째의 분석은 ‘피의자가 살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배심 참여자들의 확신’ 정도에 대한 모의재판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앞선 ANOVA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네 집단 간에 배심원들의 확신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98) = 4.94^*$, $p < 0.05$). 이어진 Post Hoc 분석결과 Bonferroni, Scheffe, Sidak 의 세 가지 분석의 결과가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의 집단들의 차이와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야기별 순서’의 집단들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Turkey b의 분석결과는 앞서 차이를 보인 네 집단 중 두 집단, 즉 변호인측의 증거제시의 순서와 관계없이 검사측의 증거제시가 이야기별로 구성된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군이며 검사측의 증거제시가 이슈별로 구성된 두 집단 역시 동일한 집단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앞선 피의자의 살인죄의

유죄가능성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일변량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살인죄에 대한 무죄가능성의 확신에도 검사측의 증거제시순서가 이야기별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차이를 이끌어내는 요인임을 암시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ANOVA 분석결과들은 모의실험참가자들의 모의재판시나리오가 제시되는 형식에 따라서 피의자의 살인죄에 대한 자신의 평결에 대한 확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향이 피의자의 살인죄에 대한 유죄에 대한 확신이나 무죄에 대한 확신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야기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5〉 배심원들의 평결의 확신에 대한 실험집단 간 ANOVA 분석결과 (n=302)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8818.31	3	2939.43	4.94*	0.003
집단내	170351.16	298	595.13		
합계	186169.47	301	618.50		

종속변수: 피의자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배심원의 확신정도

(0=0, 1=5%, 2=10%, 3=15%, 4=, 20%, ... 19=90%, 20=95%, 21=100%)

Bartlett's test for equal variances: $\chi^2(3) = 8.4287$, Prob $\chi^2 = 0.039$

〈표6〉 네 집단 간 사후검증(Post Hoc) 다중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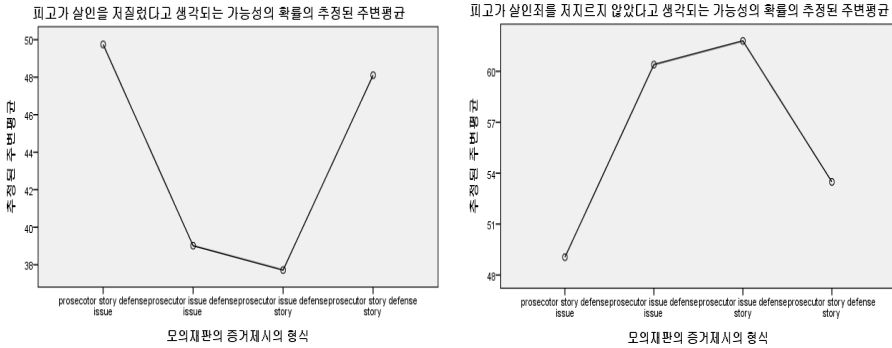
집단별비교	Scheffe	Bonferroni	Sidak
	평균차(유의확률)	평균차(유의확률)	평균차(유의확률)
(1)	-11.34*(.039)	-11.34*(.023)	-11.34*(.023)
(2)	-12.74*(.013)	-12.74*(.006)	-12.74*(.006)
(3)	-4.43(.75)	-4.43(1.00)	-4.43(1.00)

1)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 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순서의 비교;

2)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야기별 순서의 비교;

3) 검사측 이야기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와 검사측 이슈별 순서 vs. 변호인측 이슈별 순서의 비교

〈도표2〉 피의자의 살인죄에 대한 유죄가능성과 무죄가능성에 대한 배심원들의 확신의 네 집단 간 추정평균의 도표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것은 배심원 의사결정에 관한 Pennington 과 Hastie가 제시한 이야기 모델의 이론이 한국의 배심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심원의 유죄 및 무죄의 평결과 관련해서는 증언이 제시되는 순서가 이야기를 만들기 쉽도록 순서가 배열될 때 배심원들은 그 평결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형성하여 그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야기 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증거 및 정보 등을 조합하여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증거가 제시되는 순서에 의해 자신의 평결과 그 평결에 대한 확신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분석결과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제시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욱 완성도 있게 형성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내린 평결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모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변호인측의 증거제시의 순서보다는 검사측의 증거제시의 순서가 이야기 순서일 때,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배심원들이 피의자의 살인죄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검사측의 증거제시의 순서가 배심원들이 무죄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검사측에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측의 증거가 이야기를 구성하기 쉬운 이야기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유죄의 판결과 그에 대한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또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서로 잘 연결되어있는가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견은 배심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다른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방식들과 같이 수학적인 방식 또는 확률적인 방식으로 배심원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을 누적하고, 수정하고, 첨가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이론들 보다는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이야기들이 제시된 증거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평결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 모델이론이 제시하는 바를 지지하며 이 이론이 한국의 배심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시기부터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써 기대와 우려가 섞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전문화된 법조인 위주로 사법체계가 운영되어 오던 지난 시기에 판결에 대한 법률적인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가하는 일반시민들의 의구심 등이 사법제도의 신뢰도 전반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계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사법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전문화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사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김상준, 2011; 박광배, 이수정, 2009). 실제로 비 전문화된 일반인들의 사법참여와 관련해서는 배심원들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으로 해서 피

고나 원고가 다시 상고할 경우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과, 피고인과 원고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와 같은 무형(無形)의 피해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장기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평가의 시기가 마무리되고 이전의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배심원의 평결준중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기로 하였다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심원제도의 정착이 사법제도에 새로운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앞서 서론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국내 배심원의 판결에 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의 배심원들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요소들을 배제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출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국외의 선행연구결과와 이야기이론을 소개하여 한국에서의 배심원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도출 수 있도록 재판과정 및 준비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모형을 통해서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평결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배심원들이 법적인 요건과 증거 이외의 다른 요인들과 올바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재판과정에서의 주의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연구의 발견 및 공헌점이 될 수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증거의 제시순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증거제시의 순서에 있어서도 피고나 원고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순서제시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연구는 국외의 선행연구와 배심원 판결에 관한 이론의 하나인 이야기모형이 한국의 형사사법현장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일반화도 검증함으로써 한국 및 세계의 일반 배심연구 및 형사사법 연구에도 학문적인 큰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가 발견한 결과는 국내 배심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경험적이고 실증

적 연구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 여러 가지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연구에 사용된 배심원 참가자들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있었고 특히 경찰행정학과와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증거를 분석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학과의 학생들이나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의 결정과정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다. 특히 이들 참가자들의 결정이 무죄판결에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이들이 경찰행정학과학생들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의 법학과목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수강하고 있어서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Pennington과 Hastie의 이전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된 기억테스트 등을 도입하지 못하여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모델의 한국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야기 모델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여 개인단위의 배심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도식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밀한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가 살인죄에 대한 형사사건만을 다루고 있는데 민사사건에서도 이야기 모델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예, 성폭력사건 등)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봉수 (2011).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비판적고찰. 2011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김병수 (2011).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회 2011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
- 김현수(200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11호 (2009. 6), 한국법학원, 219-220면.
- 이수정(200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운용 및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 민경환 (1989). 권위주의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4(2), 146-168.
- 박광배, 이수정. (200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운용 및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 심지예 (2010).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2010.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경기대학교.
- 윤상연. 한상열 (2008).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항상 권위에 복종적일까?: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권위관계 상황별 복종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3), 41-56.
- 탁희성. 최수형(201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서울.
- Crott, H.W., & Werner, J. (1994). The norm-information-distance model: A stochastic approach to preference change in group inte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68-95.
- Divine, D.J., Clayton, L.D., Dunford, B.B., Seying, R. & Pryce, J. (2001). Jury decision making: 45 years of empirical research on deliberating group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7(3),622-727.

- Hastie, R. (1993). Algebraic models of juror decision processes. In R. Hastie (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pp. 84-1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kel NJ, Groscup JL. 1997. Crime prototypes, objective versus subjective culpability, and a commonsense balance. *Law and Human Behavior*. 21: 209 - 230.
- Hastie, R., & Pennington, N. (2000).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In T. Connolly, H. R. Arkes & K. R. Hammond (Ed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pp. 212- 228).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tie, R., Penrod, S. D., & Pennington, N. (1983). *Inside the j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ley, J. E., & Costanzo, M. (2003). Sexual harassment stories: Testing a story mediated model of juror decision making in civil litigation. *Law and Human Behavior*, 27,29-51.
- Levett, L.M., Danielsen, E., Kovera, M.B., & Cutler, B. (2005). Juror decision making. N. Brewer and K. Williams (Eds.), *Psychology and law: An empiric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Moore, P.J., Gump, B.B. (1995). Information integration i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2158-2179.
- Newman, L. F., Duff, K., Schnopp-Wyatt, N., Brock, B., & Hoffman, Y. (1997). Reactions to the O.J. Simpson verdict: (Mindless tribalism) or motivated inference processes? *Journal of Social Issues*, 53,547-562.
- Olsen-Fulero, L., & Fulero, S. M. (1997). Commonsense rape judgments: An empathycomplexity theory of rape juror story mak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3,402-427.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42-258.
- Pennington, N., & Hastie, R. (1988).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Effects

- of memory structure on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4, 521-533.
- Pennington, N., & Hastie, R. (1990). Practical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juror and jury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90-105.
-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89-206.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Reasoning in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Cognition*, 49,123-163.
- Penrod, S., & Hastie, R. (1979). Models of jury decision making: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462-492.
- Readon, M. (2008). *Jury decision making and the story model: How do deliberation style and evidence order influence the story that juries creat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Schklar, J., & Diamond, S.S. (1999). Juror reactions to DNA evidence: Errors and expectancies. *Law and Human Behavior*, 23,159-184.
- Smith VL. (1991). Prototypes in the courtroom: Lay representations of legal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57 - 872.
- Smith, B.C., Penrod, S.D., Otto, A.L., & Park, R.C. (1996). Jurors' use of probabilistic evidence. *Law and Human Behavior*, 20,49-82.
- Smith VL, Studebaker CA. (1996). What do you expect? The influence of people's prior knowledge of crime categories on fact-finding. *Law and Human Behavior*, 20: 517 - -532.
- Wolfe, M. B., & Pennington, N. (2000). Memory and judgment: Availability versus explanation-based accounts. *Memory and Cognition*, 28, 624-634.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izability of the Story Model on Jury Decision Making

Eunyoung Kim*

This study test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Story model explaining the process of jury decision making. The Story model, the most well-known explanation-based jury decision making theory, has been mostly developed and examined by Pennington and Hastie as well as produced large body of literature reporting supportive evidence for the theory proportion. The theory proposes that jurors collect and combine facts and evidence information presented at trial to construct their own story to help their final decision making for the trial case. In this story making process jurors modify the story according to their own general and/or pre-existing knowledge or experience of physical and social world to construct their own story.

To examine this main proposition of the Story model, this current study conduct mock jury experiment with a sample of 302 college students from two different university in two different regions. In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one of the four experiment groups to make decision of a criminal case presented in various orders designed to manipulate the ease with which a particular explanatory summary of the evidence (story) could be constru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found a supportive evidence for the Story model. That is jurors constructed a story by collecting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trial and the story constructed by jurors mediate each juror's decision of the case. This

* 영문소속

findings suggest that the Story model is applicable in explaining the Korean jury decision making process in criminal case trial. The limitations,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discussion.

❖ Key words : Jury trial, Mock jury trial, Jury decision making, The Story model.
Experimental study.